

 신안산대학교	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규정	규정 번호	4-1-26
		제정 일자	2024.4.15.
		개정 일자	
		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계획(설치학과 및 모집 인원)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
3. 입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4. 전공심화과정 운영, 관리에 관한 사항
5.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 관련 평가 및 환류방안에 관한 사항
6.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7. 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전공심화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
② 학사학위 운영센터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을 맡는다.

③ 위원회는 센터장은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 중 관련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/2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④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『회의비 지급 지침』에 의거해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